

인천광역시 강화군

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군 보

제1230호

2024년 8월 2일(금)

- 차 례 -

입법 예고

강화군 공고 제2024-1265호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 1

고 시

강화군 고시 제2024-1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고시 - 10

입법예고

강화군 공고 제2024-1265호

**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(공고)합니다.

2024년 8월 2일

강 화 군 수**1. 자치법규명: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**2. 개정이유**

- 민간위탁 기간변경과 함께 회원가입 대상 추가 및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대
-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5년으로 변경

3. 주요내용

- 회원가입 대상 추가(안 제6조제3항제3호)
- 시설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제1항)
- 민간위탁 기간 변경(안 제11조제2항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3일까지 강화군수(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조례 개정안	찬·반 여부 및 사유
	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

다. 의견제출 방법: 우편 또는 팩스, 전자우편

1) 주소: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(강화군청 사회복지과)

2) 팩스: 032-930-3647

3) 전자우편(이메일): je861206@korea.kr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사회복지과(032-930-3589)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공청회 개최계획 : “개최계획 없음”

6. 불 입 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등”을 “및”으로, “물품”을 “물품(이하 “장난감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위탁 받”을 “위탁받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장난감 및 관련 도서”를 “장난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공유 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

제7조제1항 중 “장난감”을 “장난감 등”으로, “훼손 또는 멸실하였”을 “훼손,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및 도서를”을 “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장난감 기증)”을 “(장난감 등의 기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및 도서를”을 “등을”로, “기증 받”을 “이를 기증받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,”를 “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1

회에 한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탁계약 기간”을 “위탁기간”으로 한다.

7.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선정함에 있어”를 “선정할 때,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위탁 운영”을 “위탁운영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와 「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대여점”이란 장난감·도서 등 그 밖에 물품을 구입, 관리, 대여, 대출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수탁자”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및 ----- 물품(이하 “장난감 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 위탁받-----.
제4조(기능)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 1. 장난감 및 관련 도서 등의 구매·정리·분류·보관·보존·축적 2. 3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기능) ① ----- -----. 1. 장난감 -----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) ①·② (생략) ③ 군수는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공유재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회원가입) ①·② (생략)	제6조(회원가입) ①·② (현행과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제7조(회원의 의무) 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9조(연회비 징수) ①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, 반납지연 시 최종반납일로부터 지연일수 만큼 대여를 불가한다.

제10조(장난감 기증) 군수는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 및 도서를 제공하고자 유관기관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다.

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

제7조(회원의 의무) ① 장난감 등 ----- 훼손,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연회비 징수) ① ---- 등을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0조(장난감 등의 기증) -----

--- 등을 -----

--- 이를 기증받-----.

제11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대여
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
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
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

<신 설>

7. (생 략)

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
되,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
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
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
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
다.

제12조(수탁자의 선정) ① 군수는
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
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
토하여 선정한다.

1.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
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
수준

2. · 3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6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에서
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

제11조(위탁계약) 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
관한 사항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1
회에 한하여 -----.

③ ----- 위탁기간-----

-----.

제12조(수탁자의 선정) ① -----

----- 선정할 때, -----

-----.

1. 위탁운영 -----

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
아니한 사항은 「강화군 공유재

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산 관리 조례」와 「강화군 행
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
례」에 따른다.

고 시

강화군 고시 제2024-179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고시

강화군 고시 제2022-228호(2022.10.27.)와 제2023-195호(2023.08.11.) 및 제2023-314호(2023.12.28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에 의거 고시합니다.

2024. 08. 02.

강 화 군 수

1. 사업명칭 : 강화2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

2. 사업시행자
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강화2지역주택조합 이*수 외 1인

나. 주 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83, 1층

3. 사업위치 :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1번지 외 52필지
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업내용	사업비	비고
분양 주택	○ 사업면적 : 103,210㎡ ○ 대지면적 : 69,251㎡ ○ 건축면적 : 12,094.5424㎡ ○ 연 면 적 : 189,671.0598㎡ ○ 건설규모 : 아파트2동(최고층수25층) 1,325세대 외 부대·복리시설(주민공동시설,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)	금411,512,268천 원	

5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승인일 ~ 2027. 12. 31.
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가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,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,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

7. 사업변경승인내용

구 분	변 경 전		변 경 후	비 고
명 칭	강화2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		좌 동	
사업계획승인	2023. 12. 27.		좌 동	
착공(예정)일자	2024. 03. 29.		2024. 09. 30.	
대지위치	강화군 선원면 창리 501번지 외 52필지		좌 동	
사업주체	강화2지역주택조합 대표 이*수 외 1인((주)서희건설)		강화2지역주택조합 대표 이*수 외 1인(두산건설(주))	
설 계 자	구하아건축사사무소		좌 동	
시 공 자	(주)서희건설		두산건설(주)	
대지면적	69,251㎡		좌 동	
건축면적	12,094.5424㎡		좌 동	
연 면 적	189,671.0598㎡		좌 동	
건 폐 율	17.46%		좌 동	
용 적 륜	184.06%		좌 동	
주택형별 (전용) 및 세대수	59. ⁹¹¹⁸ 형	514세대	좌 동	
	59. ⁸⁹⁴⁹ 형	99세대		
	72. ⁸¹³⁸ 형	344세대		
	72. ⁵⁹⁸⁸ 형	164세대		
	84. ⁹²⁸⁶ 형	204세대		
	계-----1,325세대			
사 업 비	411,512,268천원		좌 동	
사용검사예정일	사업승인일 ~ 2027. 06. 30.		사업승인일 ~ 2027. 12. 31.	
주차대수	2,018대		좌 동	
층 수	지하2층, 지상25층		좌 동	
동수(주/부)	21/16		좌 동	
기 타	- 의제처리사항(건축허가, 개발행위허가 관련 등)			

8. 관계서류(세부사항)는 강화군 건축허가과(☎032-930-351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- 별첨
1.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2.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 3. 도시계획시설사업(근린공원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 4. 도시계획시설사업(경관녹지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[별첨1]

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도시계획시설: 도시공원(근린공원)
 2. 위 치: 인천광역시 강화군 창리 산173번지 일원
 3. 면 적: 16,444㎡
 4. 도시관리계획: (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조서
- 가. 총괄표

구 분		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시설내용	비 고
총 계		16,444.0	-	-	100.0%
기본시설	소 계	1,053.0	-	-	6.40%
	도 로	741.0	-	-	-
	광 장	312.0	-	계단A, 계단B 등	-
조경시설		1,000.2	-	잔디마당, 초화원 등	6.08%
휴양시설		89.5	-	쉼터 외 8종	0.54%
유희시설		515.8	-	조합놀이대A 외 6종	3.14%
운동시설		95.0	-	체력단련시설 5개소	0.58%
교양시설		-	-	-	-
편익시설		86.0	46.8	화장실, 주차장	0.53%
관리시설		-	-	-	-
시설 계		2,839.5	-	-	17.27%
녹지 및 기타		13,604.5	-	-	82.73%

※ 근린공원 최대 시설율 40%이하 기준을 18.0%이하로 준수

나.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부호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구조	규모	건축물(㎡)			공작물 (기)	비고 ※부지면적 증감내용
							동수 (동)	바닥 면적	연면적		
	합 계		16,444.0	16,444.0							
기반 시설	소 계		1,053.0	1,053.0							
	도로		741.0	741.0							
	광장	가	312.0	312.0							
	광장-1	가-1	78.0	78.0							
	광장-2	가-2	77.7	77.7							
	광장-3	가-3	156.3	156.3							
	계단A	①	-	-							데크
	계단B	②	-	-							데크
조경 시설	소 계		1,000.2	1,000.2							
	조경시설	나	1,000.2	1,000.2							
	잔디마당	나-1	763.9	763.9							
	초화원	나-2	236.3	236.3							
	수목보호대	③	-	-							8EA
휴양 시설	소 계		89.5	89.5							
	휴게쉼터	다	89.5	89.5							
	쌈지쉼터-1	다-1	46.8	46.8							
	쌈지쉼터-2	다-2	42.7	42.7							
	선설훼드	④	-	-							2EA
	쉼터	⑤	-	-							2EA
	사각파고라	⑥	-	-							1EA
	평의자	⑦	-	-							4EA
	등의자	⑧	-	-							8EA
	그네벤치	⑨	-	-							2EA
	야외테이블	⑩	-	-							6EA
	네트쉼터	⑪	-	-							1EA
	앉음벽	⑫	-	-							17.3m
유희 시설	소 계		515.8	515.8							
	어린이놀이터	라	515.8	515.8							
	조합놀이대A	⑬	-	-							1EA
	조합놀이대B	⑭	-	-							1EA
	흔들놀이대	⑮	-	-							3EA
	바구니그네	⑯	-	-							1EA
	그네	⑰	-	-							1EA
	시소	⑱	-	-							2EA
	짚라인	⑲	-	-							1EA
운동 시설	소 계		95.0	95.0							
	체력단련장	마	95.0	95.0							
	체력단련장-1	마-1	69.6	69.6							
	체력단련장-2	마-2	25.4	25.4							
	체력단련시설	⑳	-	-							5EA
교양 시설	소 계										
	-	-									
편익 시설	소 계		86.0	86.0							
	편익시설	바	86.0	86.0							
	화장실	바-1	53.0	53.0	경량철골 구조	1층	1	46.8	46.8		
	주차장	바-2	33.0	33.0							
관리 시설	소 계										
	-	-									
녹지 및 기타	소 계		13,604.5	13,604.5							
	녹지 및 기타		13,604.5	13,604.5							82.73%

다. 도로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면적(㎡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합계					322.8	741.0				
신설	소로	3	1	2.5	86.5	216.3	진입로	북측 구역계	가-3	산책로
신설	소로	3	2	2.5	54.4	136.0	진입로	북측 구역계	가-3	
신설	소로	3	3	1.5	23.0	34.5	산책로	가-2	산-2	
신설	소로	3	4	2.5	17.2	43.0	진입로	서측 구역계	가-3	
신설	소로	3	5	2.0	2.9	5.8	진입로	산-1	북동측 구역계	
신설	소로	3	6	2.2	89.0	195.8	산책로	산-7	산-8	
신설	소로	3	7	2.2	27.3	60.1	계단	가-3	산-6	계단
신설	소로	3	8	2.2	22.5	49.5	계단	산-6	남측 구역계	

[별첨2]
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 : 강화군 선원면 창리 496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1, 중로2-2)
- 명칭 : 대로3-1호선, 중로2-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
3. 사업의 규모

도로명	폭원(m)	연장(m)	면적(m ²)	비고
대로3-1	25	220	6,102	
중로2-2	15~20	583	9,437	

4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강화2 지역주택조합 이*수 외 1인(두산건설(주))
- 주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83, 1층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7년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【별첨】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【해당없음】

【붙임】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	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구분	소유자	비고
		본번	-	부번						
합계 (40필지)						46,724	15,539			
1	선원면 창리	496	-		답	1,570	39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	선원면 창리	497	-		답	18	1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	선원면 창리	498	-	2	구	193	171	국유지	국(농림축산식품부)	
4	선원면 창리	498	-	3	구	110	110	국유지	국(농림축산식품부)	
5	선원면 창리	502	-	8	도	462	462	공유지	인천광역시	
6	선원면 창리	502	-	5	전	364	36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7	선원면 창리	502	-	7	전	132	132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8	선원면 창리	504	-	3	답	1,488	84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9	선원면 창리	504	-	4	답	3,088	1,820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0	선원면 창리	504	-	7	전	403	403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1	선원면 창리	505	-	1	답	1,243	205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2	선원면 창리	505	-	2	답	2,845	43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3	선원면 창리	505	-	3	답	3,070	585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4	선원면 창리	505	-	4	답	2,781	420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5	선원면 창리	506	-	1	답	1,091	1,012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6	선원면 창리	506	-	2	답	439	401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7	선원면 창리	508	-	1	답	2,642	660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8	선원면 창리	508	-	2	답	1,047	335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9	선원면 창리	508	-	3	답	201	7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0	선원면 창리	508	-	4	구	53	24	국유지	국(국토해양부)	
21	선원면 창리	509	-	1	도	942	312	국유지	국(농림축산식품부)	
22	선원면 창리	509	-	2	구	436	124	국유지	국(농림축산식품부)	
23	선원면 창리	509	-	13	도	111	111	공유지	인천광역시	
24	선원면 창리	509	-	10	도	318	318	공유지	인천광역시	
25	선원면 창리	517	-	3	답	2,469	112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6	선원면 창리	517	-	5	답	3,392	31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7	선원면 창리	517	-	6	답	2,042	1,097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
연번	소재지	지번		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구분	소유자	비고
		본번	-	부번						
28	선원면 창리	517	-	7	답	1,719	760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9	선원면 창리	517	-	8	전	417	43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0	선원면 창리	517	-	9	답	1,296	966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1	선원면 창리	517	-	18	답	994	197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2	선원면 창리	517	-	20	도	88	8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3	선원면 창리	519	-		답	2,953	16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4	선원면 창리	519	-	1	도	187	187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5	선원면 창리	519	-	2	답	1,814	459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6	선원면 창리	521	-		답	2,041	52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7	선원면 창리	521	-	2	도	268	26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8	선원면 창리	522	-		답	988	35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9	선원면 창리	522	-	1	도	63	63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40	선원면 창리	524	-	5	전	703	23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41	선원면 창리	524	-	7	도	243	243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
[별첨3]

도시계획시설사업(근린공원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 : 강화군 선원면 창리 산173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
- 명칭 : 강화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사업

3. 사업의 규모

- 16,444m²

4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강화2 지역주택조합 이*수 외 1인(두산건설(주))
- 주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83, 1층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7년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【별첨】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【해당없음】

【별첨】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		지목	면적(㎡)		소유구분	소유자	비고
		본번	-	부번		공부면적	편입면적			
합 계						21,843	16,444			
1	선원면 창리	514			전	1,230	245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	선원면 창리	521			답	2,041	216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3	선원면 창리	522			답	988	63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4	선원면 창리	524		5	전	703	41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5	선원면 창리	524		9	전	2,606	2,322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6	선원면 창리	산171			임	629	629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7	선원면 창리	산172			임	694	170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8	선원면 창리	산173			임	7,934	6,796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9	선원면 창리	산174			임	3,035	3,035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10	선원면 창리	산178			임	1,983	1,983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
[별첨 4]

도시계획시설사업(경관녹지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 : 강화군 선원면 창리 496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)
- 명칭 : 강화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에 따른 경관녹지 조성사업

3. 사업의 규모

- 1,976m²

4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강화2 지역주택조합 이*수 외 1인(두산건설(주))
- 주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83, 1층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7년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**【별첨】**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**【해당없음】**

【별첨】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

연 번	소재지	지번			지목	면적(㎡)		소유구분	소유자	비고
		본번	-	부번		공부면적	편입면적			
합 계						6,339	1,976			
1	선원면 창리	496	-		답	1,570	1,172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2	선원면 창리	498	-	2	구	193	22	국유지	국(농림축산식품부)	
3	선원면 창리	504	-	3	답	1,488	644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
4	선원면 창리	504	-	4	답	3,088	138	사유지	강화2지역주택조합	